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2819 판결 [건물철거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281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2가단452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 선고 2015. 11. 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2가단452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18, 17, 16, 15"를 "18, 16, 15"로 경정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70m²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8, 16,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37m² 지상 블록조 스레트 및 스라브, 샌드위치 패널지붕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1,016,590원 및 2013. 6. 14.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80,16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14행부터 같은 쪽 17행까지

라. 이 사건 토지 중 37m²에 대한 2012. 3. 21.부터 2013. 6. 13.까지의 임료는 1,478,462원(= 이 사건 토지 중 22/32 지분에 대한 임료 1,923,000원 × 32/22 × 37m²/70m², 원 미만 버림)이고, 2013. 3. 21. 이후 월 임료는 169,911원(= 이 사건 토지 중 22/32 지분에 대한 월 임료 221,000원 × 32/22 × 37m²/70m²)이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3행 "해당 점유부분에"부터 같은 쪽 4행 "있다."까지

해당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금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6행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금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중 도면 특정 부분에는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판사문춘언

판사이경호

판사오대훈

별지